

건강한 국민 행복한 생활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국민건강증진 도우미 21C 체육지도자 연합
since 1999



수신자 보건복지위원장

(경유)

제목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위-714 (2010. 08. 11)와 관련,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을 불임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적극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대한운동사협회



담당자 홍지영 사무총장 안근욱 이사장 박종성 회장 옥정석(8. 18)
협조자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김기진(계명대교수), 운동사법제화위원장 길제호(경희대교수)
시행 대한운동사협회- 10 - 27(10/8/18) 접수
(우) 137-87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67 강남상가 10동 304호 / <http://www.kacep.or.kr>
전화: (02)586-3813 팩스: (02)586-3819 / tokacep@hanmail.net / 공개

대한운동사협회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의견

건강관리서비스법안(2010.5.17 변웅전의원 대표발의)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초고령화 사회 국민의료비 절감,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법안으로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운동관련) 일부 조항에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항목의 내용 또한 미진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우리 협회는 물론 체육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노정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관련 위원회 및 교수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안의 수정(안)” 및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운동관련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

가.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이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운동전문가(이하, 운동사)를 특정

화하지 않고 배제하고 있어 운동관리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낳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7조(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제1항 제3호에 “운동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의 내용이 있음.

3.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제1항의 각호에 의사·한의사 및 간호사, 영양사 등만 적시함.

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운동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용되는 경우, 지금 현재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약 1만 명으로 추산됨) 운동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이 법안에서 정한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운동관련)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이 법안 제22조(개설허가의 취소)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이 법안 제23조(과징금 처분) 제1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운동사 등 운동관리 업무종사자들을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같은 (운동관련)위법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자들은 자연히 의사·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른 임무를 가진 서비스요원들로 하여금 운동관리 업무를 담당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대하여 운동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차치하고서라도 전문자격사의 직역을 무시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체육계는 경

악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임.

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의하면 제 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운동관련 전문자격사를 지정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운동전문가 자격제도가 없어 이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믿고 따를 수 없는 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발의로 유발된 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 사안은 미래의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 해결방안

방안 1. 이 법안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방안 2. 건강관리서비스(영양부문)를 대비하여 국민영양관리법을 제정했듯이 이 법안 제8조 제1항 제3호(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운동사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운동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함께 개정해야 함.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

육지도자는 보건의료지식의 기반을 둔 전문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법안의 통과에 대비하는 한편,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동지도 사업(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을 담당할 운동사 양성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운동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

방안 3.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이 운동에 있는 만큼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수정제의(안)

발의안	수정제의안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좌동 2. 좌동 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동사 자격을 인정받고 건강관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호번개정]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좌동 ③ [신설] 운동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010. 8.

대한운동사협회 회장 옥정석(단국대 교수)

운동사법제화위원회 위원장 길재호(경희대 교수)

전국운동사관련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기진(계명대 교수)